

【 7 】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8. 01.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 나. 환경부(수도정책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양주시 수도시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안 제2조)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 ※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공포 2007.1.3. 시행 2008.1.4.)으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

나.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 ⇒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
- ※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

다. 부담금 산정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1.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1호)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준공 예정연도 시점에서의 사용인구와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2.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시설 등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안 제4조제1항제2호)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 순자산은 설비자산에서 감가상각액, 부채액 등을 제외한 금액
- 추가사업비는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

3. 급수구역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안 제4조제1항제3호)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용수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라.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안 제8조)
-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 되었을 경우에도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안 제9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및 과오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안 제11조)
-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수도법 제68조)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양주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양주시 여비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 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 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 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⑥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①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 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부과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협약체결된 사항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원인이 발생하고 계약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 시설)에 대한 수돗물 1m³당 사업비
 -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text{추가사업비}]$$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text{원인자부담금} = \text{순자산}/\text{시설용량} \times \text{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급수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부과 대상과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그 외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 별표1의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률을 적용한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신축시설】

다음 각호의 시설군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시설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건축연면적이 2,000m²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 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가구주택)
2. 숙박시설군 :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m²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콘도 미니엄)
 - 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 가.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나. 교육원(연수원)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다. 직업훈련소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바. 도서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 영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노인복지·사회복지·근로복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아.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
 - 자.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 이상
4. 공장시설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의 공장시설
5. 의료시설군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m²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등)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다. 장례식장
6. 판매·유통·영업시설군 : 판매·유통·영업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m²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
 - 나. 제2종 균린생활시설
 - 다. 판매 및 영업시설
 - 라. 위락시설
 - 마. 자동차관련시설(다만,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사.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아. 관광휴게시설

7. 기타시설군 : 기타시설로 건축연면적 2,000m²이상인 다음 각호의 시설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나. 운동시설
 - 다. 업무시설
 - 라. 창고시설
 -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바. 공공용시설
 - 사. 묘지관련시설

【 중 · 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있는 시설물의 중 · 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중 · 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않고 있는 시설물의 중 · 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 · 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않고 있는 시설물의 중 · 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중, 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중 · 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중 · 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제4조제1항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1 [신축시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 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제5조제1항 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급수추정량은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6.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 하고 신축 할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에 부과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외 · 부과하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는 건축연면적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한다.

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 및 금액 산출방법

시설유형별	급수추정량(L/일)	산 출 방 법
주거시설군	403	세대수×2.6인×403/1000×톤당산정금액
숙박시설군	40	건축연면적(m^2)×40/1000×톤당산정금액
교육연구, 복지시설군	20	건축연면적(m^2)×20/1000×톤당산정금액
공장시설군	실사용계획량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또는 신청자의 1일 사용계획량×톤당산정금액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계획사용량 보다 초과 사용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의료시설군	20	건축연면적(m^2)×20/1000×톤당산정금액
판매, 유통, 영업시설군	20	건축연면적(m^2)×20/1000×톤당산정금액
기타시설군	20	건축연면적(m^2)×20/1000×톤당산정금액
업무시설군	공공업무시설은 제외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상기 건축물 외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단위 : 원)

계 량 구 경 별	분 담 금 액	비 고
13mm	120,000원	
20mm	330,000원	
25mm	580,000원	
32mm	1,060,000원	
40mm	1,790,000원	
50mm	2,860,000원	
80mm	5,930,000원	
100mm	10,120,000원	
150mm	22,050,000원	
200mm	31,300,000원	
250mm	42,260,000원	
300mm	52,730,000원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_1 = CA\sqrt{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_2 = CA\sqrt{2gh}(\text{오리피스공식})$$

$$- Q_2 = 0.64 \times \frac{a}{10000} \times \sqrt{2 \times 9.8 \times 10p} \times 3600 = 3.2ap^{1/2}$$

$$Q_1 = \text{초당 손실수량}(m^3/sec)$$

$$Q_2 = \text{시간당 손실수량 } (m^3/hr)$$

$$C = \text{유량계수 } (C_a \times C_v)$$

$$C_a = \text{수축계수 } (0.666 \text{ 적용})$$

$$C_v = \text{유속계수 } (0.97 \text{ 적용})$$

$$\therefore C = 0.666 \times 0.97 = 0.64$$

$$A = \text{면적}(m^2) = 10,000a(cm^2)$$

$$g = \text{중력가속도}(9.8m/sec^2)$$

$$H = \text{수두}(m) = 10p$$

$$p = \text{수압}(kg/cm^2)$$

(수두 10m는 수압 1kg/cm²에 해당)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times L$$

$$Q = \text{손실수량}(m^3)$$

$$A = \text{면적}(m^2)$$

$$L = \text{연장 }(m)$$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